

2024학년도 1학기 신촌·국제캠퍼스 학부생 입대휴학 안내

2024학년도 1학기 개강일(3월 4일) 이후 입대 예정자는 먼저 일반휴학을 신청하고 추후 입대하기 전 입대휴학을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. 2024. 5. 15.(수)까지 입대할 경우 2024학년도 1학기는 일반휴학이 아닌 입대휴학 학기로 인정되나, 5. 16.(목)부터 입대자는 일반휴학 학기로 인정됩니다.

※ 재학 중 학기 2/3선(5월 15일) 다음 날인 5월 16일부터 입대하는 자는 해당 학기와 성적이 인정되어 휴학 신청일자에 관계없이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음

■ 신청 기간

휴학신청 및 승인시점	휴학 신청 자격	수업료 반환
2024. 2. 1.(목) 10:00~ 3. 15.(금) 17:00	1) 2024. 3. 15.(금)까지 입대하는 자는 등록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입대휴학 신청 가능하며, 신청 기간 내 입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입영일 전까지 즉시 입대휴학 신청 가능	수업료 전액
2024. 3. 16.(토) 9:00~ 5. 15.(수) 17:00	2) 2024. 3. 15.(금) 이후 입대하는 자는 2024. 3. 15(수)까지 우선 일반휴학을 신청하고 추후 입대휴학을 추가로 신청해야 등록금 납부 없이 신청 가능 <u>※일반휴학을 신청하지 않고 3.15.(금)이 경과한 경우,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만 입대 휴학이 신청 가능</u> 하며, 신청 기간 내 입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입영일 전까지 휴학 신청 가능	휴학승인시점별 수업료 반환율 적용
2024. 5. 16.(목) 9:00~ 2024. 7. 31.(수) 17:00	2024. 5. 16.(목)부터 입대하는 자(재학생, 휴학생 모두)는 <u>입영일 1주일 전부터 입영일 전까지</u> 휴학 신청 가능	수업료 반환 없음

※ 2024년 8월 이후에 입대휴학을 하는 경우 2024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 기간에 맞춰 입대휴학 신청할 것

■ 신청 방법 및 승인 방식

- 가. 신청 방법: 연세포탈서비스 ⇨ 학사정보시스템 ⇨ 학사행정 ⇨ 학적 ⇨ 휴학신청 ⇨ 휴학구분:입대휴학 신청 및 증빙서류 등재(입영통지서 첫 장, 2MB 이하)
- 나. 승인 절차: 연세포탈서비스에 등재된 증빙서류 검토 후 승인
- 다. 입대휴학은 신청과 동시에 자동 승인되는 일반휴학과 승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 시점에 따라 등록금 반환금액이 달라짐
- 라. 유의사항
- 1) 증빙서류는 이미지 파일, PDF, 한글 파일 형태로 등재 가능
 - 2) 증빙서류는 2MB 이하일 경우에만 등재 가능

■ 수업료 반환

휴학승인시점	수업료 반환률	비고
2024. 3. 15.(금) 17:00 까지	전액	
4. 1.(월) 17:00 까지	수업료의 5/6	
4. 30.(화) 17:00 까지	수업료의 2/3	
5. 15.(수) 17:00 까지	수업료의 1/2	학기 2/3선

가. 수업료 반환은 학기별 등록금 반환 일정에 준함

나. **수업료 반환 소요 기간 : 휴학 승인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약 2주**

다. 반환 계좌 : 학생 본인의 연세포탈서비스 등록 계좌 (계좌 정보 미등록시 휴학 신청 불가, 휴학 신청 시점에 등록된 계좌로 반환 [휴학 후 수정 시 미적용])

1)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반환액은 대출받은 기관으로 상환

2) 장학금 수혜자는 학생지원팀(학생회관 218호, ☎ 02-2123-8191~2)에 장학금 취소 신청을 해야 휴학 신청 가능

■ 재학 중 입대휴학자의 성적 처리 및 학기 인정

가. 학기 2/3선(2024. 5. 15.)까지 입대

- 해당 학기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

- 해당 학기는 입대 휴학 학기로 인정(일반휴학 “휴학학기” 수에 포함되지 않음)

나. 학기 2/3선 후(2024. 5. 16.부터) 입대

- 해당 학기의 중간시험 성적을 학기말시험 성적으로 대체함.

단, 성적평가는 전적으로 담당교수의 역할이므로 반드시 담당 교수에게 입대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수업 및 평가 대체여부를 확인해야 함

- 해당 학기는 재학 학기로 인정

다. 관련 규정: 학사에 대한 내규 제25조

학교 홈페이지 ⇨ 연세소개 ⇨ 대학현황 ⇨ 규정집 ⇨ 본문 ‘휴학’ 검색하여 확인 가능

■ 일반휴학 중 입대휴학자의 휴학기간

가. 학기 2/3선(2024. 5. 15.)까지 입대: 해당 학기는 일반휴학 ‘휴학학기’ 수에 포함되지 않음

나. 일반휴학 중 학기 2/3선 경과 후 입대: 해당 학기는 일반휴학 ‘휴학학기’ 수에 포함됨

다. 일반휴학 중 입대 시에는 입대 전까지 입대휴학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. 입대휴학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반휴학 중 군 복무를 한 경우에는 일반휴학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

라. 일반휴학기간은 통산하여 3년(6학기)을 초과할 수 없음. 단, 건축공학 전공 내의 건축학(5년제) 과정은 7학기를 넘지 못하고, 편입 학생의 휴학기간은 편입학 이후 잔여 재학연한의 1/2을 넘지 못함

마. 휴학학기 수 조회 : 연세포탈서비스 ⇨ 학사정보시스템 ⇨ 학사행정 ⇨ 학적 ⇨ 학생 - 학적정보조회

■ 입대휴학의 취소 및 재입대

가. 입대휴학이 승인된 이후 귀가 조치나 입영 연기 등으로 인하여 입대일이 변경되면 해당 결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류(귀가증명서 등)와 입대휴학 취소원을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입대휴학을 취소해야 함

나. 입대휴학을 취소할 경우 학적 상태는 직전 상태(재학 또는 일반휴학)로 환원됨

다. 재입대가 확정되면 [학교 홈페이지 ⇨ 학사지원 ⇨ 각종 신청서 양식 모음]에서 ‘입대휴학원서’를 내려 받아 입영통지서와 함께 학사포탈시스템으로 신청

■ 유의사항

가.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,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합격생 (캠퍼스내/간 복수전공은 해당사항 없음)의 첫 학기에는 질병, 임신, 출산, 입대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음

나. **2024년 8월 졸업신청자는 졸업신청 취소를 해야 휴학 신청 가능**

다. 미납 도서가 있는 경우 반납 후 휴학 신청 가능(학술정보원 학술자료운영팀 문의 ☎ 02-2123-6100)

라. **주요 학사 안내와 긴급 연락을 위해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연세포탈서비스에 직접 수정해야 함**

마. 전역 후 복학이 승인된 학생은 예비군연대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자동 전입 처리되나 전역 전 복학 허가자는 개별 신고하여야 함(예비군연대, ☎ 02-2123-8461)

바. 입대휴학 관련 상세 규정: ☑학칙 제8장, ☑학사에대한내규 제6장, 제8장 등

학교 홈페이지 ⇨ 연세소개 ⇨ 대학현황 ⇨ 규정집 ⇨ 본문 ‘휴학’ 검색하여 확인 가능

사. 휴학 관련 문의처

- 1) 휴학관련 FAQ: 학교홈페이지 ⇨ 학사지원 ⇨ 학사행정 ⇨ 휴학
- 2) 교무처 학사지원팀
 - ☎ 02-2123-2090/2093: 휴·복학 추가 문의
 - ☎ 02-2123-3200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
- 3) 휴학 중 건강공제회 가입: 학생건강공제회(☎ 02-2123-3350)